

2024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금융(핀테크) 창업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인 금융 아이디어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발굴·육성·지원을 목적으로 『2024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』을 운영하오니 우수한 금융혁신 역량을 가진 (예비)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3월 6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I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금융혁신 분야(핀테크) 창업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인 금융 아이디어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발굴 및 육성

□ 주요내용

- 모집대상 : 금융혁신(핀테크)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
 - * 핀테크 분야(모바일 지급결제, 블록체인, 보안인증, 인슈어·레그테크, 데이터 분석 등)
- 선정규모 : 총 7개사 내외(사업화지원(신규) 5개사, 사후관리(기존) 2개사)
 -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내용 : 사업화지원금 최대 35백만원(자부담 현물 20%, 현금 10%)
 - 사업화지원 분야 : 시제품 개선, 마케팅, 투자유치, 지식재산권 확보 등
 - 창업 공간 제공
 - 교육·컨설팅 :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컨퍼런스, 워크숍 등
- 사업기간 : 협약 후 ~ 2024년 12월 까지

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

- 핀테크 관련 분야 (예비)창업자 및 (공고일 이후 7년 이내)창업기업
 - 기존 IT 및 금융·보험 관련 기업은 핀테크 분야 진출의 경우 지원가능
- 금융·보험 IT융복합(핀테크, 금융S/W, 금융보안, 모바일 금융, 보안 인증, 블록체인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 등) 기업
-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점의 도내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 기업(사업종료 후 1년 이상 유지)

□ 신청제외대상

-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기 선정 되어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 및 중단 처분자(기업)
- 동일 아이템으로 타 기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(개인, 법인)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4조 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
 - ※ [참고 1]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가상화폐거래소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기업
-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□ 우대사항(서면평가 적용)

1. 전북으로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금융기술기업 중 매출 1억원 이상(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)이거나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(법인설립일 이후 투자 누적액)(2점)
2.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* 선정 기업(1.5점)
3. 금융사, 민간 액셀러레이터(중기부 액셀러레이터 등록기업), 벤처캐피탈의 추천서 제출(1점)
4.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입주기업(1점)

* 금융규제 샌드박스: 신산업·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

Ⅲ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- 사업화자금 : 총 7개사(사업화지원 5, 사후관리 2) 최대 35백만원 지원
(단위 : 천원, 개)

구 분	지원금	기업수	합계
사업화 지원(5개사) 사후관리(2개사)	35,000	2	70,000
	30,000	3	90,000
	27,000	2	54,000
합 계		7	214,000

-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
- 지원항목

구 분	항 목	구 분	항 목
인건비	인건비	마케팅	전시회참가비(국내, 해외)
시제품 제작 및 기술정보활동	외주용역비		홈페이지 제작비
	기자재 임차비		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
	지식재산권 확보비		기타 홍보비

※ 전시회 참가비의 경우 전시회 부스, 항공권 지원 가능 이외의 비용은 지원 불가

○ 창업 공간 무상제공

- (주)효성 협업공간인 미래기술혁신센터(인큐베이팅 공간) 지원
- 보육실 현황 : 7개실 (11평 ~ 22평)
- 센터 규모 : 3층(지상), 연면적 1,600m²
- 시설 세부내용

구 분	개 소
인큐베이팅실	7EA (11~22평/EA)
행 정 실	1EA (11평/EA)
세미나실	1EA (16평/EA)
창업교육실	2EA (22평/EA)



○ 교육 및 멘토링 지원

- 금융혁신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등
- 금융 빅데이터 교육 연계지원

○ 네트워크 및 투자 지원

- 핀테크 컨퍼런스 및 세미나, 벤치마킹,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킹 등

□ 사업 수행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4년 12월까지

IV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2024. 3. 6.(수) ~ 3. 25.(월) 16:00

□ 접수방법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접수

- 온라인신청사이트(<http://event.jbci.or.kr>) - 공지사항 다운로드
- 사업지원 신청 : 공고문,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업로드
- 신청서 수정 및 확인

· 공고 마감일까지 수정 및 접수 확인 가능

· 이름, 휴대전화, 이메일, 신청 시 설정 비밀번호(숫자4~8자리) 입력 후 본인 신청내용 확인 가능

※ 주의사항 : 마감시간 이후 접수 전에 대해 미접수 처리 예정이며,
접수 마감일 업로드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
□ 접수문의 : 오픈이노베이션팀 황지영 주임(063-220-8941 / qwer6958@ccei.kr)

□ 제출서류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
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(필수)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(필수)

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필수)

○ 대표자 신분증 사본 (필수)

○ 사실증명(홈택스 발급가능) (필수)

- 기창업자 :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폐업증명원(폐업사실이 있을 경우)

* 사실증명 발급절차 : 국세청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/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** 기창업자: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자 / 예비창업자: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

○ 실적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 증빙서류 (기업성과 작성자)

매출	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
수출	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, 해외특허등록서, 국제인증서, 국제협약서 등
투자	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,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
고용	4대보험 가입자 명부

○ 기타 제출서류(아이템 관련 증빙 서류) (해당자)

□ 선정평가

평가단계		평가설명
1단계	서면평가	· 전문가(금융 또는 IT전문가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·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→ 대면평가 대상선정
2단계	대면평가	· 전문가(금융 또는 IT전문가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·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 대면평가

○ 서면평가

- 평가항목 :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시장성, 성장가능성과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, 대표자 역량 등
- 최종선발 기업의 1.5배수(11개사)이상 선발

○ 발표평가

- 평가항목 : 대표자의 의지와 기업의 역량,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

○ 최종선정 : 최종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최종 확정

※ 최종선정기업 중도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후순위자로 선발할 수 있음

□ 추진일정

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(모집인원이 선발기업의 1.5배수에 미달할 경우 연장공고 진행할 수 있음)

VII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(예비)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 (통보일 기산, 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【참고】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2	부동산업	L68
3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R9112
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R9124
5	무도장 운영업	R91291
6	기타 개인 서비스업	S96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